

NGO SERIES #19



노무현 정권하 정부위원회
주요인사 성향 분석

조영기

자유기업원

훑어보기

위원회는 정부조직이 할 수 없는 특정문제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조정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러한 위원회는 다변화·다기화되고 있는 정책환경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중요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역할과 순기능으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위원회는 정부시스템의 일부로 인식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주목할 현상 중의 하나는 많은 정부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며, 특히 이념지향의 과거사관련위원회가 대거 설립되어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과거사관련위원회를 국정운영의 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소위 말하는 ‘통치이데올로기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략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0년 동안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데 앞장선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우리의 현대사를 자기부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자학적(自虐的) 역사관으로 해석하고 좌파 역사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도 좌파 역사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성향도 좌파적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천착한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주도세력은 친일파였다.’, ‘민족분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등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토로하면서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한다. 이들은 ‘역사청산론’과 ‘주도세력교체론’을 앞세워 대한민국건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길에 대한 역사적 전통성은 부정하고 오히려 실패국가인 북한전체주의를 두둔하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단체들도 한결같이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매몰되어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친북좌파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한 단체는 대한민국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인사와 단체를 소위 ‘민주인사’로 둔갑시키고, 심지어는 간첩으로 활동한 인사를 ‘민주인사’로 둔갑시키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체제전복세력’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인사’로 둔갑시킨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행위는 지탄받아야 한다.

좌파적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인물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방송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상임 및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의 결정자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활동 중 상

당부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이들은 폐쇄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들만의 좌파역사’를 확대재생산하는데 주력하였다.

모든 역사는 공과(功過)가 있다. 후세의 과제는 공(功)의 역사는 계승·발전시키고 과(過)의 역사는 반성하고 극복하는 것이 옳다. 즉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물론 과거의 성과에 대한 성찰적 학습도 미래의 올바른 역사의 방향을 선택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과거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역사인식에 근거한 ‘역사청산론’은 위험천만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제 역사인식은 ‘계승발전론’에 따라 새로운 미래의 바탕을 마련하는 역사를 정립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역사청산론’에 입각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국가정상화위원회’로 재편하고 ‘역사 비틀기’와 ‘역사 바꾸기’의 선봉에 선 인물들에 대한 ‘친북단체와 친북인명사전’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목차

훑어보기	2
1장 서론	6
2장 정부위원회와 국가기능	8
1. 위원회 설립근거	8
2. 위원회의 유형	9
3.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11
3장 위원회 현황	14
1. 정부위원회 현황	14
2. ‘과거사 관련 행정위원회’ 현황	15
4장 ‘과거사 관련 행정위원회’의 위원 성향	18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	18
2.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22
3.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25
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위원회>의 위원	26
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27
6.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위원	30
7. <노근리 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	31
8.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위원	31
9.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의 위원	32

5장 기타 정부위원회의 위원 성향	33
1.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33
2. <국가청렴위원회>의 위원	35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36
4. <방송위원회>의 위원	38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40
6.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	41
6장 관련단체의 이념성향과 위원회의 활동평가	42
1. 위원이 소속(관련)된 단체의 이념성향	42
2. 관련위원회의 활동평가	46
7장 결론	51

1. 서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각종 정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과거사 관련 정부위원회’는 그 정당성과 법적 설치근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운영과정에서 많은 국민적 갈등을 야기했다. 바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보다는 특정이념을 중심으로 한 ‘역사 비틀기(history twist)’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역사 비틀기’에 동참한 일련의 집단이나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파적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역사를 재해석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좌파적 수정주의 역사관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초반이다. 이때의 좌파적 역사관은 우리의 현대사를 ‘자기 부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자학적(自虐的) 역사관’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런 수정주의적 역사관은 사회저변 곳곳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좌파적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매몰되어 이를 확산하는데 동참하였으며, 심지어는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유린하는데도 일조하였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불순한 과거역사(?)’를 청산한다는 명분 아래 각종 ‘과거사 관련 정부위원회’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또한 좌파단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협조와 비호 아래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사회의 주류세력을 교체하겠다’는 주장들을 토해냈다. 바로 이들의 행태는 소중한 역사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었다.

좌파적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즉 이들은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민족분열주의자가 외세인 미국을 등에 업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는 정통성이 없다’고, 또한 ‘6.25 민족상잔의 전쟁을 반외세, 반봉건의 민족해방전쟁이었는데 제국주의세력의 개입으로 민족해방의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실패한 체제를 추종하고 실패한 국가모델을 전파하기 위해 암약하던 이들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온갖 혜택을 주었다. 이처럼 좌파적 수정주의자들에게 기존의 역사는 청산되어야 할 역사이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사회집단은 교체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즉 좌파적 수정주의적 이념과 주장들은 ‘역사청산론’과 ‘주류교체론’으로 포장되어 확산되었다.

2007년 말 현재 416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정위원회도 44개나 된다. 필요 이상의 정부위원회는 위원회와 타부처간, 또는 위원회 상호 간의 기능 및 설치목적의 중복 또는 유사성 등의 문제로 인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정위원회의 난립은 위원회 상호간, 행정위원회와 타부처

간에 관할권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념지향의 ‘과거사 관련 행정위원회’가 중복 설립됨으로써 이념대립을 자초하여 국론분열의 단초가 되었다. 주지하는 것처럼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수정주의적 정향을 가진 편향적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위원회가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역사 비틀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 비틀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반(反)역사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런 반(反)역사적이고 반(反)헌법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면면에서 그 일단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과거사 관련 정부 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위원회에 대거 포진해 왔다. 이들은 위원회를 장악하고 과거경력에 근거한 연줄망을 통해 좌파적 정책이 시행되는데 막후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좌파적 특성이념과 정향을 가진 폐쇄적 인력풀에 의지해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국가운영에도 많은 논란과 국력낭비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위원회에 대해 많은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위원들의 성향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통념과 너무도 판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잘못된’ 이념정향은 대한민국의 진로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념적 정향을 확인하여 올바른 좌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포진해 있는 위원들의 이념적 정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들의 과거활동을 확인하는데 현실적 제약이 많다. 이런 제약은 소위 <존안자료>라는 명분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과거사 관련 정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추적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연구는 제약된 환경 하에서 인터넷과 출간된 발간, 신문보도 등을 통해 이들의 과거행적을 중심으로 이념정향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 위원들이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이념정향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한다.

II. 정부위원회와 국가 기능

1. 위원회 설립근거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 중의 하나는 많은 정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정부위원회는 416개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정위원회도 44개나 된다. 정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과 관련된 법률으로는 헌법, 정부조직법(제4조, 제5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및 기타 개별법령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행정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통일적인 법적 근거와 유형분류 없이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조직·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부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대별된다. 동법 제5조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하여 행정위원회설치의 근거가 되며, 또한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고 하여 자문위원회의 근거규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에 의하면 “정부조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0조에서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때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예외적인 제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행정위원회는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둘 수 있기 때문이다.¹⁾

1) 현행 정부조직법 제2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원회의 유형

위원회란 ‘특정문제에 있어 상이한 견해를 조정하고 사실과 목적에 대해 집단적인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복수의 자연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²⁾ 전통적 행정기구인 정부관료제 기구는 수직적·계층제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는 그 기능에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반면 위원회 조직구조는 다양한 의견이 투영될 수 있는 수평적·합의제 구조이다.

정부조직에 대한 이해는 관리적 접근, 정치적 접근, 법적 접근이 있다.³⁾ 관리적 접근법은 정부조직 구조와 과정에 있어서 능률성, 경제성 및 효율성을 중심 가치로 하여 경제적 합리성과 생산성에 초점을 둔다. 반면 정치적 접근법은 정부조직을 민간조직과 차별성을 강조하여 정치권력의 발달(development), 유지(maintenance), 소재(location)에 초점을 둔다. 이때 정부조직의 지배적 가치는 대표성이며, 대표성은 관료제의 조직을 통해 모든 관계집단의 이해를 조정, 통제한다. 그리고 법적 접근법은 정부조직을 공정한 심판 또는 갈등해결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해하고, 위원회를 이에 적합한 조직형태로 지목했다. 따라서 법적 접근법에서 강조하는 위원회조직은 전통적 관료제 조직구조와는 차별성이 있다.⁴⁾

위원회의 유형은 그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권한, 기능, 구성 및 지위 등의 변수에 의해 분류하며 주로 권한에 따라 분류한다. 권한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구속력이 없는 조언적 성격의 의사결정만을 하는 자문위원회, 집행권은 없으나 구속력이 있는 의결위원회, 그리고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과 집행권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상에서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란 ‘특정 개인 또는 조직 전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일종의 참모기관의 성격을 지닌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자문위원회는 대체로 자문에 그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언적 성격이 강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문위원회는 설치근거의 법적 지위에 따라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또는 훈령에 의한 자문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헌법에 근거한 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

2) Hicks, H. and C. Gullett.,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 New York: McGraw-Hill, 1976, p. 332.

3) Rosenbloom, D. and Goldman, D., Public Administration: Understanding Management, Politics, and Law in the Public Sector, 4th. New York: McGraw-Hill, 1998.

4) ibid, pp. 434~44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이 있으며,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소속의 〈반부패특별위원회〉⁵⁾, 〈규제개혁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 소속의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자문위원회의 규모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위원의 수가 지나치게 대규모일 경우 비능률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3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되나,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위원회도 존재한다. 이러한 대규모 위원회의 경우 소수로 구성된 소위원회, 분석위원회 혹은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 위원들은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행정관료에 의해 지명 내지 위촉된다. 위원의 임기도 일정하지는 않으나 미국에서는 대체로 3년 임기에 매년 위원의 1/3을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며,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2년 임기가 보편적이고 임기 만료 후에 연임하는 경우가 많다.

나.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는 행정부처에 소속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를 누리면서 행정관청적 성격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관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행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보좌(사무)기구를 두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집행권도 가지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권과 재결권을 행사하는 준사법권도 가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따라 특성이 다르지만 직무의 독립성, 기능통합성, 합의제 행정관청이라는 일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⁶⁾ 행정위원회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따라서 행정위원회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행정조직의 계층성에 따르는 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원의 신분보장이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위원회는 행정의 신중성, 창의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의제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권을 갖는다. 또한 집행기능, 준입법기능 및 준사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그리고 행정위원회는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 두 위원만이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는 스테거링 팀(staggering term)제도를 택하여 행정의 중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5) 〈반부패특별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되었으며, 2008년 3월부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통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되었다.

6) 이상규, “행정위원회의 기능과 문제점”, 『월간감사』, 26호, 1991, pp. 27~28.

대통령 또는 관료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행정계층제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면서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위원의 신분이 보장된 합의제 기관을 독립규제위원회라 한다. 이러한 독립규제위원회는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행정위원회라고 볼 수 있으며, 독립성, 합의성,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⁷⁾

3.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가. 위원회의 역할

국가기구(state apparatus)는 국가가 수행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능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국가기능이란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국가활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기능은 국가형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결국 국가기구는 국가권력이 발휘되는 일련의 제도 및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도 국가형태 속에서 여러 국가기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구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⁸⁾ 이러한 국가기구의 한 유형인 행정위원회가 정부기구의 형태로서 채택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구조가 사회현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료제가 아닌 정부위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관료제에 의해서만 국가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위원회는 관료제에 비해 일정한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위원회가 관료제에 비해 갖는 차별성은 먼저, 관료제는 일상적·비일상적 국정과제를 수행하지만 정부위원회는 정부관료제의 운영을 점검하는 행정개혁기능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의 초일상적인 과제를 수행한다. 둘째, 국가행정기구의 근간인 정규적인 관료기구로는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중립적인 정당성(legitimization) 기능을 정부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이는 현대 다원주의사회의 국가 - 사회관계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의 투입정치를 국가기구에서 수용하는 참여국가(participative state)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참여국가의 환경에서 일반국민에게 독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지적되는 거버넌스를 가지는 정부위원회 기구는 시민참여의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위원회 기구는 ‘어떤(what) 성과를 달성하였나?’ 보다는 국정현안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고 보여 지는 측면인 ‘어떻게(how) 성과를 달성하는가?’의 측면이 부각된다. 즉, 정부위원회 기구는 업무내용보다는 형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정부위원회의 공적 가시성 측면에서 위원회는 위원의 구성을 사회명

7)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적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독립규제위원회 제도는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독립규제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06, p. 546.

망가로 구성하게 된다.

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권한과 중요성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규제위원회 못지않게 커지고 있다. 특히 다변화·다기화되고 있는 정책환경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위원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우선 순기능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는 시민참여의 기제로 작동한다. 대외적으로 위원회는 시민으로 하여금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공무원간의 상호 의사전달을 증진시키는 기능이 있다. 시민참여는 시민과 정부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활동을 감시·감독할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 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즉 위원회는 행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다수의 참여를 통하여 여러 이해관계를 유기적으로 대표하며 전문가의 참여로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원들간의 신중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의제형태의 의사결정제도라 할 수 있다.⁹⁾

둘째, 위원회는 외부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고, 그래서 합리적 정책결정과 이로 인한 정책적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오늘날 복잡하고 기술적인 이슈들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부 역량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도입시킬 수 있다.¹⁰⁾

셋째, 위원회는 정부 내부에서 이미 개발된 아이디어나 결정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지지나 정당성 제고의 역할을 수행하며,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해결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처럼 위원회가 가진 순기능으로 인해 정책당국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혹은 기존의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책당국과의 밀접한 협조관계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의 협조자가 될 수 있다. 이때의 전제조건은 위원회가 위원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위원들이 제공하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바로 올바른 ‘위원회의 구조화’는 기술적 전문성과 함께 행정의 중립성과 안정성, 책임성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역기능도 있다. 위원회 제도와 같은 합의제 조

9) 김병섭·김철, 「정부위원회조직의 개혁: 반복되는 답과 잃어버린 질문」,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2002, p.1.

10) 김병섭, “정부조직의 개혁: 관리적 능률성과 정책적 능률성, 「신동아」, 2001.6.

직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저해되고, 기밀성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며, 시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 정부조직 내부의 많은 위원회는 많은 회의를 의미하고, 이것은 회의 참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특히 많은 민간 주체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될 경우 그 과정이 훨씬 복잡해져 오히려 조정비용이나 감독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관료의 경우 본연의 업무보다는 회의와 위원회 참석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목표전도의 현상이 발생된다. 그리고 위원회가 참여의식을 유발한다고 하지만 위원회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하찮은 일에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위원회에는 주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의 배타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생겨나기도 한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위원회는 합의제의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책임을 공유하면서도 책임을 분산시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위원들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무책임하게 될 가능성이 많으며, 타협적인 결정이 행해질 수 있고, 사업의 집행과 그 효율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단순히 책임 회피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정책을 위원회가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¹¹⁾

11) 황수연, “정부위원회 이렇게 줄이자”, 『2007 정책제안』, 자유기업원, 2007, p.301.

III. 위원회 현황

1. 정부위원회 현황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위원회는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2007년 말 현재 행정위원회 44개, 자문위원회 372로 총 416개이다.¹²⁾ 그리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위원회는 9개의 과거사위원회와 52개의 자문위원회가 증가하였다. 이를 소속별로 살펴보면 대통령 소관 위원회와 국무총리 소관 위원회에서 많이 증가하였고, 역할별로는 행정위원회가 많이 증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행정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된 현상은 정부위원회 증가는 정부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과거 정부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가운데 행정편의와 책임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받았다.¹³⁾ 일단 행정위원회가 생기고 나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과 공무원들을 지원받아 ‘행정기구화’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처럼 각종 위원회의 증가는 사무국 인력의 증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무원 총정원제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행정위원회는 정부부처를 비공식적으로 확대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12) 행정자치부, 「정부위원회90개 통폐합 등 대폭정비」, 보도자료, 2007. 12.7.

13) 국민의 정부에서 위원회가 급증하자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비난이 나타났다.(주간조선, DJ정부는 위원회공화국인가? 제1652호, 2001. 5. 10.)

<표 1> 정부위원회 현황

연도	합계	소 속				성 격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처	독립형	행정	자문
1997	380	10	23	347		23	357
1998	383	13	26	344		29	354
1999	319	16	28	275		29	290
2000	352	18	31	303		32	320
2001	366	18	32	316		33	333
2002	364	18	34	312		35	329
2003	368	17	35	316		35	333
2004	358	23	44	291		42	316
2005	381	25	47	309		42	339
2006	403	28	50	322	3	44	359
2007*	416	28	52	333	3	44	372

자료: 2007년 행정자치통계연보,
2007년 자료: 행정자치부 「정부위원회90개 통폐합 등 대폭정비」, 보도자료, 2007.12.7.

2. ‘과거사 관련 행정위원회’ 현황

기본적으로 행정위원회는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행정기관 제도유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5부라고도 한다.¹⁴⁾ 행정위원회를 제5부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구조(board governance)가 정부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 중의 하나는 많은 정부위원회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이데올로기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행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7년 말 현재 44개의 행정위원회 중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가진 행정위원회, 즉 과거사 중심의 위원회는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12개가 운영되고 있다. 물론 위원회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 중 좋은 아이디어를 가려내는 훌륭한 기능을 수행한다. 흔히 위원회는 집단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14) Cohen, David M., "Amateur Government: When Political Appointees Manage the Federal Bureaucracy", CPM Working Paper 96-1, 1996, p. 166.

<표 2> 과거사관련정부위원회 현황

소관	위원회 명	근거법령	인원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기구
대통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15인	장관급	3인 (차관급)	사무처 (152)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	일제강점 하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	11인	장관급	1인 (차관급)	사무국 (고공단) (504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9인	장관급	1인 (차관급)	사무국 (차관급) (81인)
국무총리	군외문사진상 규명위원회	군외문사진상 규명 등에 관한특별법	7인	장관급	1인 (고공단)	사무국 (36인)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위원회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	9인	비상임		사무국 (45명)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부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9인	비상임	-	사무처 (파견인력 46인)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16인	국무총리	-	사무처 (파견인력 5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제3조	20인	국무총리	-	사무처 (파견인력 21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제3조	18인	국무총리	-	지원단 (파견인력 9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심의 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15인	위원 중 총리임명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15인	국무총리		
	삼청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인	국무총리		

그러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국론을 통합하기 보다는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데올로기(ideology)는 사람들의 믿음과 행위에 미치는 관념을 말한다. 그리고 어떤 관념형태를 본인의 사회적 기반과 관련시켜 그 이해를 받

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이데올로기적 견해라 한다.¹⁵⁾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통치계급에 의해 형성된다. 통치계급은 이데올로기적 주도권을 얻기 위해 하위계급의 이해와 열망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합치되길 원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과거사 관련 각종 위원회’설립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정립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은 기존의 통념을 넘어선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 간에는 이면지평에 따라 차이가 부각되고 분쟁과 갈등이 훨씬 더 조장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정부는 주류세대 교체론을 바탕으로 각종 ‘과거사 관련 진상규명 위원회’를 운영하였다.

15) 앤서니 기든스 저(김미숙 외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1, p.382.

IV. ‘과거사 관련 행정위원회’의 위원 성향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¹⁶⁾에 의하여 3명의 상임위원과 11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이며 상임위원은 차관급 정무직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 동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집단희생 등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2005년 12월 1일 출범 하였다.

(1) 안병욱(安秉旭) 위원장

안병욱 위원장은 2007년 12월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병욱 위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국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나와 현재 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2000.10~2001.12),¹⁷⁾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체육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2003),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2004)을 거쳐 현재 상지대학교 이사로 있다.

안병욱 위원장은 2003년 10월23일과 2004년 3월11일 일련의 성명을 통해 간첩 송두울(宋斗律)을 ‘민족적 지성’으로, 그의 구속을 ‘민족적 자산의 탕진’ 등으로 묘사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및 송두울 석방운동을 벌여 온 인물이다. 그는 송두울무죄석방대책위 상임대표도 맡았었다.¹⁸⁾

또한 안병욱 위원장은 송두울구속대책위의 상임대표, 한겨레통일문화상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그가 심사위원장으로 있는 한겨레통일문화상은 소위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이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이 상의 수상자는 주로 친북좌파단체나 인사가 받았다.¹⁹⁾ 안 위원장은 교수 324명과 함께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단순 지지를 넘어 강정구, 황상익 교수 등과 함께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법률 제 7541호(2005.5.31)로 공포되었으며, 동년 12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17)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17278(검색일: 2008. 3. 26)

18) 김승욱, 「대한민국의 블랙리스트」, 조갑제닷컴, 2008, p. 154.

19)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자는 1999년 재독음악가 윤이상, 2000년 강만길 통일연대 상임고문, 2001년 문규현 통일연대 전 상임대표, 문정현 민중연대 고문, 2002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2003년 아시안게임 북한 미녀(?) 응원단장, 2004년 임동원 전 외교안보특보이다.

공동단장으로 하는 교수지원단을 구성해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원내진출 이후에도 민주노동당의 정책개발, 의정활동정책지원, 여론주도층의 지지 견인 등의 활동도 하였다.²⁰⁾

(2) 김동춘(金東椿) 상임위원

김동춘 위원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와 동 대학원을 나와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위원은 <참여연대> 정책위원장(2000.2~2002.2), 참여사회연구소장(2002.2~2003.2)을 지냈고,²¹⁾ 현재 아웃사이드 편집위원 및 황해문화 편집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김동춘 위원은 ‘국보법 폐지촉구 전국교수선언’(2004.10.7), ‘송두울석방시민사회 1000인 선언’(2003.10.23) 및 한총련 합법화 및 구속자 석방을 주장했던 ‘한총련 합법화 1000인 선언’(2002.7.19), ‘양심수 석방 300인 선언’(2002.8.10), ‘양심수 석방 각계인사 기자회견’(2003.4.8) 등에 참여했었다.²²⁾

(3) 김준곤(金俊坤) 상임위원

김준곤 위원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경북대 법대를 나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제1상임위원(2002.4),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2003.2),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2003~), 열린우리당 중앙위원(2003~),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비서관(2005)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다.²³⁾

(4) 이기욱(李基旭) 위원

이기욱 위원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기획위원장(1994)을 거쳐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 위원은 2003년 7월 이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이후에는 KBS사외이사로도 활동 중이다.²⁴⁾

20) 김승욱, 「대한민국적화보고서」, 조갑제닷컴, 2006, p. 131.

21)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74739(검색일: 2008. 3. 26)

22) 김승욱(2008), p. 154.

23)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62062(검색일: 2008. 3. 26)

24)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33916(검색일: 2008. 3. 26)

이 변호사는 ‘일심회’ 사건 변호사로서 2006년 11월에는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일심회’ 조직원들이 간첩 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간첩’이라고 단정해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 구속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일심회’ 조직원들의 간첩 혐의는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통일연대 소속인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의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소위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이하 해외인사귀국위)> 결성을 주도했다. <해외인사귀국위>는 송두율, 광동의 등 북한의 대남공작원을 민주인사라며 합법적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추진했던 조직이다. 이 변호사는 2003년 8월8일 해외인사귀국위 결성선언문을 통해 “한통련 반국가단체 규정 철폐”와 “용공조작 도구인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등을 결의했다.

(5) 최일숙(崔一淑) 위원

최일숙 위원은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회원이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위원은 <여성민우회> 여성단체연합자문위원, <여성의 전화> 자문위원도 역임했다.²⁵⁾ 최일숙 위원은 2004년 4월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에 동참했고, 2005년 8월 ‘대미종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의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60인 선언’에 참여했다.²⁶⁾

(6) 정재근 위원

승려인 정재근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도 맡고 있다.²⁷⁾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통일연대>를 비롯해, 평택범대위, 탄핵무효범국민행동, 파병반대범국민행동, 국보법폐지국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2005년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에 간첩·빨치산 출신을 ‘통일애국열사’로 미화한 공원을 조성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2006년 2월28일 소위 종교단체 대표자 발표문을 통해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정비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남측의 국가보안법을 들어 남측이 헌법과 법률에 남아있는 냉전적 요소들을 정비하는 일에 먼저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

25)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31120(검색일: 2008. 3. 26)

26) 김승욱(2006), p. 133.

27) 2007년 12월28일 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선임된 정재근 위원은 국가인권위 위원직도 겸직하고 있다.

장했다.

(7) 송기인(宋基寅) 전(前)위원장

송기인(宋基寅) 신부는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진실·화해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송기인 신부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²⁸⁾ 송기인 신부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의 부산본부 상임지도위원을 거쳐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이하 계승연대)>의 부산본부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다.²⁹⁾

<전국연합>은 1991년 12월 1일 재야운동권의 13개 부문단체와 12개의 지역단체가 참여하여 결성되었다. 2007년 6월 현재에는 8개 부문 단체, 12개 지역연합, 9개의 참관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재야운동체이다.³⁰⁾ <전국연합>은 강령에서 ‘민족민주운동의 투쟁의 구심이자 정치적 대표체로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전국연합>은 북한의 통일 3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³¹⁾을 수용한 연방제통일방안을 수용함으로써 친북지향의 성향을 여과없이 나타내고 있고, 북한은 대남지령방송인 ‘민민전 방송’을 통해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굳게 뭉칠 것을 선동하고 있다.³²⁾ 또한 각종 사안발생시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는 2000년 4월 6일 발족하였으며, 2006년 5월 11일 사단법인으로의 조직전환 총회를 거쳐 2006. 8. 24에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현재 54개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다. <계승연대>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명예회복 및 정신계승’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입단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친북성향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8) 법타(法陀) 전 위원

법타(法陀) 승려는 <6.15 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의 공동대표이다. 법타 승려는 60여 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불교계인사를 접촉(?)해 왔다. 그는 북한에 ‘금강국수공장’을 짓는 등 불교계에서 소위 민간 대북지원

28)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_esp?WW_NO=312013(검색일: 2008. 3. 26)

29) 김승욱(2006), p.128.

30) 제성호·유동열, 「한반도통일과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제」, 자유기업원, 2008, pp. 83~84.

31)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의미는 통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북한만의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3원칙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이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통일3원칙의 이면에는 ‘주한미군철수를 통한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략·전술적 차원의 선전구호에 불과하다.

32) 유동열,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다나, 1996, p. 96.

에 앞장서는 것과 함께 ‘국보법 폐지’, ‘송두울 석방운동’ 등에 주력해 왔다.³³⁾

(9) 김경남 전 위원

김경남 목사는 한신대학교 재학 시절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에서 활동하며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다. 김 목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사업본부장, KNCC 인권사회국장 등을 거쳐 2005년 4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다. 김 위원은 ‘한국전쟁 후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진상규명운동’에도 참여해 왔다.³⁴⁾

(10) 김갑배(金甲培) 전 위원

김갑배 위원은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2003.10), <부패방지위원회> 비상임위원(2005.4~2006.5)을 역임하였다.³⁵⁾ 김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노동복지위원장을 거쳐 2003년 2월부터 <대한변협> 법제이사에 있으면서 국보법을 비판해 왔다. 김 변호사는 2004년 3월 29일 송두울에 대해 7년이라는 1심의 판결이 내려지자 “송교수가 적극적 이적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시대에 맞지 않는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동년 8월 23일 대법원의 국보법 존치 필요성에 대한 판결이 나자 “적절치 못한 행동” 등으로 비난했다.³⁶⁾

2.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친일반민족위원회)>는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되었다. <친일반민족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장관급) 1명, 상임위원(차관급) 1명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3) 김승욱(2006), p. 129.

34) 김승욱(2006), p. 132.

35)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90215(검색일: 2008. 3. 26)

36) 김승욱(2006), pp. 131~132.

(1) 성대경(成大慶) 위원장

성대경 위원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성 위원장은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의 비상임위원(2005.4~2007.6)으로 재직한 후 2007년 6월 이후 동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³⁷⁾ 그는 현재 <역사문제연구소>의 고문으로 있으며, 2004년 9월 16일 ‘국보법 폐지촉구각계인사선언’에도 참여하였다.

(2) 김정기(金正起) 위원

김정기 위원은 서울대학교에서 한국학박사를 취득 후 서원대 총장(2000.3~2003.12)을 거쳐 2005년 12월 이후 제주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김 위원은 2005년 4월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³⁸⁾ 또한 김 위원은 현재 <제주4.3위원회> 위원이며, <역사문제연구소> 소장(1994~2000)도 역임했으며, <전국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은 국보법 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 통일 및 북한의 핵개발과 선군노선을 옹호해온 <사월혁명회>³⁹⁾의 운영위원이다.

(3) 노경채(盧景彩) 위원

노경채 위원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수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현재 <친일반민족위원회>의 상임위원이다. 그는 1991년 이후 <역사문제연구소>의 연구위원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다.

(4) 강만길(姜萬吉) 전 위원장

강만길 전 위원장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고려대 사학과와 동대학원을 거쳐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05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친일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을 역임했다. 강만길 전 위원장은 제2대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1996.2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1998.9),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고문(2000), 상지대학교 총장(2001~2005),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2003.1~)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현재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 ‘월간 민족21’ 공동발행

37)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_asp?WW_NO=67813(검색일: 2008. 3. 26)

38)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_asp?WW_NO=53535(검색일: 2008. 3. 26)

39) 사월혁명회(구 사월혁명연구소)는 1960년 4월혁명에 참가했던 세대가 4월혁명 이념의 올바른 정립과 그 구현을 목적으로 1988년 6월 18일에 설립하였다. 사월혁명회는 전국연합, 통일연대의 회원단체이다.

인, <경실련 통일협의>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⁴⁰⁾

강만길 위원장은 ‘국보법폐지연대’ 고문으로서 ‘송두울무죄석방대책위’의 고문, ‘한총련합법화대책위’ 공동대표 및 ‘통일연대’ 상임고문을 맡았었다. 그는 한총련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했던 ‘양심수석방 300인 선언’(2002.8.10), ‘송두울석방 시민사회 1000인 선언’(2003.10.23), ‘국보법 폐지촉구 각계인사 공동선언’(2004.9.16) 등에 참여했었다. 강 위원장은 2005년 4월 ‘김일성 독립운동가’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이제 문제는 냉전세력이다’ 등 각종 저술에서 “이승만(李承晩)·박정희(朴正熙) 정권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없었다. … 반대로 북에 성립된 정권은 조국해방에 대비했던 세력들이 연합하여 세운 정권이였다”며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는 식의 사관을 확산시켜 온 인물이다⁴¹⁾.

강 위원장은 ‘6.25사변(事變) 또는 동란(動亂)’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미인 ‘사변이나 동란’이 아닌 ‘전쟁(戰爭)’이라 부를 것을 주장하며, 이는 김일성에 의한 ‘침략전쟁’이 아닌 ‘통일전쟁’임을 강변해왔다⁴²⁾. 강 위원은 이승만·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도 “역사적 정통성이 없다”고 질타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에 대해 한국이 만성적 ‘무역적자국’, ‘외채과잉국’, ‘식량수입국’으로 전락시킨 데 불과하다고 비난하는 한편, 심지어 박정희 정권이 IMF를 불렀다는 궤변을 펼쳐왔다⁴³⁾. 강 위원은 2001년 3월 ‘민족 21’이라는 월간지를 창간했는데, ‘민족 21’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고무·찬양하는 성격의 기사를 잇달아 게재해온 잡지이다⁴⁴⁾.

40)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_asp?WW_NO=56(검색일: 2008. 3. 26)

41) 「남한 단독정권으로 성립된 이승만 정권은 그런 점에서 정통성이 약했다. 반대로 북에 성립된 정권은 동북항일연군에서 일본군과 직접 싸웠고 또 민족해방운동단체인 조국광복회를 성립시켰던 세력과 조선의용군을 조직하여 역시 일본군과 전투를 했고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해서 조국해방에 대비했던 세력들이 연합하여 세운 정권 이였다(「이제 문제는 냉전세력이다(중심)」)」

42) 「민족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역사인식에서 보면 6.25전쟁은 단순한 침략전쟁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북쪽에서 이를 뻔했고 다음에는 남쪽에서 이를 뻔했던 통일전쟁일 수 있는 것이지요(「강만길 선생과 함께 생각하는 통일(지영사)」)」「젊은 세대의 객관적 관점에서는 6·25전쟁이 침략전쟁이기 보다 통일전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긴밀할 대로 긴밀해진 한·미·일 공조체제를 곧바로 깨트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화로운 「협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공조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통일 어떻게 할까요?(당대)」」

43) 「진일파속정을 할 수 없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으며, 옳은 의미의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없었던 朴正熙 정권이 역사적 정통성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李承晩 정권도 마찬가지였지만 역사적 정통성을 못 가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20세기 우리역사, 강만길 교수의 현대사강의(창작과 비평사))」「朴正熙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자경제체제는 한국을 「만성적 무역적자국」과 「외채과잉국가」로 만들었습니다...재벌중심경제체제는 엄청난 외채를 끌어들이므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민주주의에 크게 역행했으며, 농업을 철저히 희생시켜 「만성적 식량수입국」으로 만들고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켜 국내 각 계층의 격심한 갈등을 빚어냈습니다.(이상 같은 책)」」「1960년대부터 7,80년대를 통해 축적된 이 같은 구조적 결함이 결국 1990년대의 이른바 「IMF관리체제」를 낳은 결과 엄청난 수의 성실한 직업인들을 실업자로 만들어 자살률이 급등하는 등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박정희 정권이 우리경제를 비민주적 방향으로 오도한 결과 1990년대의 IMF관리체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이상 같은 책)」

44) 2006년 1월호 「우리공장은 21세기 先軍시대 이끌어갈 현대식 경공업공장입니다」라는 평양화장품공장 탐방 기사에서는, 지배인 유학천의 입을 빌어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先軍시대의 멋쟁이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장의 나갈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는 등 북한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선전했다. 이 잡지는 2005년 12월호에서 日本 조선대

(5) 이이화(李離和) 전 위원

이이화 전 위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위원은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1986), ‘동학농민전쟁 1백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 <동학100주년 기념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역임했다.⁴⁵⁾

<동학위원회>의 이이화 위원은 강정구 교수 파문과 관련하여 ‘베트남 공산통일은 통일이 아니던가’라는 글에서 “호치민이 도발하여 이룩한 베트남의 공산통일은 통일이 아닌가? ... 강교수는 냉전성역을 깨려 노력한 학자다.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조종을 하루 빨리 올려 악법의 망령을 떨쳐버리자”⁴⁶⁾라고 주장하면서 ‘냉전성역’의 파괴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이화 위원은 2004년 9월 16일 ‘국보법 폐지촉구각계인사선언’에 참여하였다.

(6) 박연철 위원

박연철(朴淵徹) 위원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5.18소위 위원장(1995), <KNCC>인권위원 부위원장(1996), <민변>의 부회장(1998.6~2000.5), <부패방지위원회> 비상임위원(2002.2~2005.1)을 역임하였고, 2005년 4월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⁴⁷⁾ 박 위원은 국보법 폐지 및 송두울 석방운동을 벌여 왔다.

3.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⁴⁸⁾의 위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는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그 관련자

한동성 교수라는 인물과의 인터뷰를 통해 先軍정치에 대해 이렇게 선전했다.「조선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수호함으로써 경제의 부흥발전을 위한 안전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 정치」「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치」「우리 민족 대 미국」이라는 대결구도 속에서 민족평화를 수호하는 반전평화 정치」「우리 민족의 통일을 담보하는 통일애국의 정치」같은 기사는 북한의 조선인민군에 대해「오직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군대」「일반적 군인이 소비와 파괴로 특징 지워지는 것과 달리 창조와 건설의 군대」라며 「북한이 선군사상과 선군정치에 따라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주체(主體)혁명」을 완성해가는 선군시대를 이뤄갈 것이다」고 적고 있다.

45)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59811(검색일: 2008. 3. 26)

46) 오마이뉴스, “베트남 공산통일은 통일이 아니던가”, 2005. 10. 8.

47)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32210(검색일: 2008. 3. 26)

48)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합예정이다.(연합뉴스, “과거사위 통합 가능성”, 2008. 2.9)

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군의문사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과 상임위원(고위공무원단) 1명과 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의문사위>는 군인, 경비교도대원, 전·의경, 의무소방대원으로서 복무하는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한다. <군의문사위>의 활동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이다.

(1) 이해동(李海東) 위원장

이해동 위원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한신대학교를 나왔으며, 2005년 5월 이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민주개혁국민연합>의 공동대표(1998.12)도 맡았으며, 현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후원회장과 <민주공원묘역추진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이하 한국전 규명위)>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이하 베트남위원회)>의 대표이다. 이해동 위원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로 국보법 폐지, 송두울 석방운동을 벌여 왔다.

(2) 김호철(金鎬喆) 위원

김호철 위원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후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환경고위과정을 수료했다. 김 위원은 <환경운동연합> 반핵특위위원(1994)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환경재단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김 위원은 1994년 '굴업도 핵폐기물처분장이 안전하다'는 원자력문화재단의 광고는 허위라며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다.⁴⁹⁾

4.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위원회>의 위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일제피해진상규명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일제피해진상규명위>는 당연직 3인⁵⁰⁾과 위촉직 6명⁵¹⁾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비상임이다. 위원

49)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108798(검색일: 2008. 3. 26)

50) 일제피해진상규명위의 당연직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다.

51)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 전기호(경희대), 김광열(광운대), 김민영(군산대), 김창록(경북대), 박맹수(원광대), 이성순(한국정신대연구소장)이 맡고 있다.

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전기호(全基浩) 위원

〈일제피해진상규명위〉의 위원장은 전기호 경희대 교수이다. 전 위원장은 〈전국연합〉에 소속된 〈사월혁명회〉 산하 사월혁명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송두울석방시민사회 1000인선언(2003.10.23)’에 참여했다.

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다. 동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민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5기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1) 하경철(河炘喆) 위원장

하경철 위원장은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 위원장은 (사)노사문제협의회 부이사장(1989), 월간 ‘노사광장’ 편집위원장(1990~1994),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1995), 헌법재판소 재판관(1999~2004)을 역임하였다. 현재 하 위원장은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1998)와 〈민보상위원회〉의 제5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정동익 위원

정동익 위원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 후 서울대학교신문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정 위원은 동아일보(1967.11~1975.10)에서 기자활동을 하였으며,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회장(1985.5~1987.4),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1987.5~1994.1),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1988.11), 월간 ‘말’ 발행인(1988.11~1994.4),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공동대표(1995.12~1998.6), 〈방송위원회〉심의위원

(1996.2~1998.2)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정 위원은 2004년 4월 이후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2000년 11월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를 맡고 있다.⁵²⁾

그리고 정동익 위원은 <전국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월혁명회>는 <전국연합> 소속이다. <사월혁명회>는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통일 및 북한의 핵개발과 선군노선을 옹호해 온 단체이며, <사월혁명회>를 만든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윤성식(尹成植)은 98년 10월 월북, 북한 노동당 외곽조직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동신문 등에 “통일 성업(聖業)에 여생을 받치리라”(2004.8.26)는 등의 글을 올린 인사이다.

(3) 김선건(金善建) 위원

김선건 위원은 충남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해 서울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을 거쳐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⁵³⁾ 그는 대전충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회장(1992~1994)을 거쳐 <전국연합 대전충남연합> 공동의장과 <통일맞이대전·충남겨레모임> 공동의장, <참교육대전시민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4) 임상택(林尙澤) 위원

임상택 위원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사법학과를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⁵⁴⁾ 임 위원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이사와 <전북민언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민언련>은 국보법폐지 등 노무현 정권의 4대입법을 지지해 온 좌편향 단체이다.

(5) 전민기(全民基) 위원

전민기 위원은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를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다. 전 위원은 사법연수원 교수(1993~1996),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중재부 위원(1996),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사위원회 위원(2002)를 역임하였다.⁵⁵⁾

52)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_asp?WW_NO=106259(검색일: 2008. 3. 26)

53)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_asp?WW_NO=50871(검색일: 2008. 3. 26)

54)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_asp?WW_NO=108187(검색일: 2008. 3. 26)

55)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_asp?WW_NO=31587(검색일: 2008. 3. 26)

(6) 장경삼(張慶三) 위원

장경삼 위원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장 위원은 서울지법 판사((197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5), 서울고법 부장판사(2000)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⁵⁶⁾

(7) 강민조 분과위원회 위원장⁵⁷⁾

〈전국연합〉 대의원인 강민조 위원은 〈통일연대〉 공동대표,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을 겸하고 있다. 〈통일연대〉 역시 〈전국연합〉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연방제 실현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추종해 온 친북단체다.

강 위원은 1991년 5월 시위도중 사망한 강경대 부친이다. 그는 93년 이래 〈유가협〉 회장을 맡아왔으며, 1994년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서울지역 의장, 2002년 친북단체인 〈실천연대〉 공동상임의장을 거쳐, 2005년 이래 〈5.18기념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다.

(8) 김동민 분과위원회 위원장

김동민 위원은 고려대 임학과, 한양대 대학원을 거쳐 현재 한일장신대 인문사회과학부 신문방송학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위원은 〈민보상위원회〉의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김 위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를 맡았으며,⁵⁸⁾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SBS 사외이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9) 정현 전 위원

정현 위원은 〈불교인권위원회〉의 소속이다. 〈의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한상범이 공동대표로 있는 〈불교인권위원회〉는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친북단체다.

56)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_asp?WW_NO=31586(검색일: 2008. 3. 26)

57) 강민조 위원은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보상위”에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 위원회’, ‘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생활지원금지급심사분과 위원회’가 있다.

58)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_asp?WW_NO=31586(검색일: 2008. 3. 26)

6.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위원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제주4.3사건진상위원회)>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000년 8월 발족하였다. <제주4.3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무총리, 당연직 위원은 7명,⁵⁹⁾ 위촉직 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강만길 위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의 강만길 위원의 내용 참조

(2) 김정기 위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의 김정기 위원의 내용 참조

(3) 이돈명 위원

이돈명 위원은 <민변>회장 출신으로서 58명에 달하는 송두율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인물이며,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친북단체인 <전국연합>의 고문과 국보법폐지연대 고문을 맡고 있다. 이 위원은 한총련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했던 ‘양심수석방300인선언(2002.8.10)’, ‘양심수석방각계인사기자회견(2003.4.8)’, ‘국보법폐지 촉구각계인사공동선언(2004.9.16)’등에 참여했었다. 이 위원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민변>고문으로 활동해왔다. 조선대 총장(1988~1992),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1995~1996),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2001~2003)을 역임하였다.

(4) 서중석(徐仲錫) 위원

서중석 위원은 서울대학교에서 한국현대사로 박사 학위를 취득 후 성균관대학교 사학

59) 제주4.3사건진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법제처장, 제주지사이다.

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 위원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및 ‘역사비평’주간(1986)을 역임하였고, 2000년 5월 이후 제4대 <역사문제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다.⁶⁰⁾ 서중석 위원은 ‘국보법폐지촉구전국교수1000인선언’(2004.10.27.), ‘국보법전면폐지촉구70년대민주화운동가선언’(2004.10.27.) 등에 참여했었다.

7. <노근리 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

<노근리 명예회복위원회>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노근리명예회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다.

동 위원회의 위원 중 김동완 위원은 ‘국보법폐지촉구각계인사선언’(2004.9.16), 한총련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했던 ‘양심수석방 300인 선언’(2002.8.10), ‘양심수석방 각계인사 기자회견’(2003.4.8), ‘한총련합법화 1000인 선언’(2002.7.19), ‘송두울석방시민사회 1000인 선언’(2003.10.23)에 참여했다.

8.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위원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동학농민위)>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7인의 정부위원⁶¹⁾과 8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다.⁶²⁾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⁶³⁾ 중 안병욱(가톨릭대) 위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이화(동학농민기념재단 이사장) 위원과 김정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고문) 위원은 <친일반민족위원회>의 위원도 맡고 있다.

60)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_asp?WW_NO=21261(검색일: 2008. 3. 26)

61) 정부위원은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보훈처장이다.

62) 동 법에 의하면 2010년 1월 1일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3)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이만열(전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동완(천도교교령), 안병욱(가톨릭대), 이이화(동학농민기념재단 이사장), 김한식(국방대 명예교수), 정남기(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김정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고문), 김소자(연합뉴스 부국장)이다.

9.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의 위원

(1) 승려 효림 위원

효림 승려는 <통일연대>,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실천불교승가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했거나 활동 중에 있다. 효림은 2004년 8월 15일 이적단체인 범민련, 한총련을 ‘애국애족단체’라고 부르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그는 2005년 2월 이후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2) 오충일(吳忠一) 위원

오충일 위원은 황해도 봉산 출신으로 연세대를 나왔다. 오 위원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의장(198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회장(1994.2),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1998.8),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1998.12) ‘노동일보’ 대표 이사장(2001.3~2002.11), <국정원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2004.11)을 역임하였다.⁶⁴⁾ 그리고 오충일 위원은 운동권 단체인 ‘6월 사랑방’ 대표, ‘송두울석방대책위’ 고문 및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추진준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오 위원은 2004년 10월 6일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운동본부 등을 제안하는 성명을 통해 “국보법은 수구매국세력의 도구이자 독재정권 안보, 분단고착화의 도구가 되어 온 국제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3) 한홍구(韓洪九)

한홍구 위원은 성공회대 교수이다. 그는 한 잡지의 기고에서 김일성을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 “귀족영웅이 아닌 자수성가형 민족영웅”, “스탈린이나 더샤오팅도 넘볼 수 없는 한 나라의 오직 한 명의 혁명가만이 누릴 수 있는 혁명의 창건자”, “철저한 실용주의자” 등으로 묘사⁶⁵⁾하면서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했다.

64)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55377(검색일: 2008. 3. 26)

65)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 『한겨레21』, 2004, 7.8

V. 기타 정부위원회의 위원 성향

1.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출범하였다.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유남영(柳南榮) 상임위원

유남영 위원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미국 워싱턴대학교 시애틀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2003.2)를 거쳐 2006년 5월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활동 중에 있다.⁶⁶⁾

<민변>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하여 평택범대위, FTA저지범국민대책본부, 탄핵무효범국민행동 등에 참여해 온 변호사 조직이다. <민변>은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송두율 구속 당시 “제2, 제3의 송두율 교수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여야 한다”(2004.7.21의 성명)는 등 송두율을 변호하면서, 58명에 달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였다.

(2) 원형은 비상임위원

원형은 위원은 부산장로신학대학 및 대학원으로 거쳐 현재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 위원은 ‘부산인권센터’ 공동대표, ‘국가보안법폐지 부산연대’ 공동대표, <6·15공동선언 부산 실천연대> 공동대표, <부산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⁶⁷⁾

<6·15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의 중앙조직인 <6·15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는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강령 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단체이다. 실천연대는 “살인귀 악마 같은 미군을 몰아내자”(2006년 6월10일 성명), “선군정치 지지가 우리 민족

66)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33433(검색일: 2008. 3. 26)

67) 국가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

승리의 지름길”(‘6·15와 우리민족’에서), “고려연방제는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통일방안”(2006년 8월27일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이라는 등 친북성향을 보여 왔다.

원 위원이 부산지역 공동대표로 있는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목정평)> 역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통일연대> 참여단체이다. <목정평>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및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 2004년 ‘탄핵무법·부패정치청산범국민행동(탄핵무효범국민행동)’,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범국민행동(파병반대범국민행동)’ 등 좌파들의 각종 범대위에 참여해왔다.

원 위원은 한총련 합법화 및 구속자 석방을 주장했던 ‘한총련합법화 1000인 선언’(2002.7.19), ‘한총련합법화 종교인 1000인 선언’(2002.7.18), ‘양심수석방 300인 선언’(2002.8.10), ‘양심수석방 각계인사 기자회견’(2003.4.8) 등에 참여했었다.

(3) 정재근 비상임위원

승려인 정재근 위원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정 위원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운영위원,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 공동대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통일연대>를 비롯해, ‘평택범대위’, ‘탄핵무효범국민행동’, ‘파병반대범국민행동’, ‘국보법폐지국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2005년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에 간첩·빨치산 출신을 ‘통일애국열사’로 미화한 공원을 조성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정재근 위원은 2006년 2월28일 소위 종교단체 대표자 발표문을 통해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정비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남측의 국가보안법을 들어 남측이 헌법과 법률에 남아있는 냉전적 요소들을 정비하는 일에 먼저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신혜수(申蕙秀) 위원

신혜수 위원은 경기 양평 출신으로 이화여대를 거쳐 미국뉴저지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신 위원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제협력위원장(1992),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사회복지학과(1993~2000), 한국여성의 전화 공동대표(1995~2002), 한국여성단체 공동대표(1999.1~2002.1), 보건복지부 요(要)보호자선

도대책위원(1996~1999), 정무2장관실 여성사회복지정책자문위원(1997), 정부공직자 윤리위원(2003~2005)을 지냈다.

신 위원은 현재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여성교육 특별분과 위원장(1998~), 경기도 要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 부위원장(1998~), 한국인권재단 이사(1999~),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2000~)을 맡고 있다.⁶⁸⁾

신혜수 위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공동대표>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여연>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및 ‘파병반대범국민행동’, ‘탄핵무효범국민행동’,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FTA저지범국본)’ 등 각종 범대위에 참여해 온 단체이다. 신 위원은 ‘한총련합법화 종교인 1000인 선언’(2002.7.18)과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70년대 민주화운동가 공동선언’(2004.10.27) 등에 참여한 바 있다.

(5) 조국(曹國) 비상임위원

조국 위원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 법대와 동대학원 및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을 거쳐 서울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2000~200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2002~2005), <민보상위> 자문위원(2000~2001), 여성부 성매매방지대책자문단 자문위원(2003~2004), 국무조정실 성매매방지기획단 위원(2003~2004),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2004~2005)을 거쳐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2003~), 여성부 업무평가위원회 위원(2003~)으로 재직 중이다.⁶⁹⁾

조 위원은 한총련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했던 ‘양심수석방 300인 선언’(2002.8.10), ‘송두울 석방시민사회 1000인 선언’(2003.10.23), ‘국보법폐지 촉구 전국교수 1000인 선언’(2004.10.27) 등에 참여해왔다.

2. <국가청렴위원회>의 위원

<국가청렴위원회>⁷⁰⁾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68)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_asp?WW_NO=66137(검색일: 2008. 3. 26)

69)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_asp?WW_NO=33449(검색일: 2008. 3. 26)

70) 현재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합하여 2008년3월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되었다.

(1) 성해용(成海鏞) 위원

성해용 위원은 한국신학대학을 거쳐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정치신학을 전공하였다. 성 위원은 한신대 평화연구소 연구원(1986~1988), ‘반부패국민연대’ 이사(1998~2005),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1999~2005),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2005년 7월부터 <국가청렴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활동 중에 있다.⁷¹⁾

<국가청렴위원회>의 성해용 위원은 ‘한총련 합법화 종교인 1000인 선언’(2002.7.18), ‘양심수 석방 각계인사 기자회견’(2003.4.8) 및 ‘국보법 전면 폐지 촉구 70년대 민주화운동가 선언’(2004.10.27), ‘송두울석방 시민사회 1000인 선언’(2003.10.23)에 참여했다.

(2) 김거성(金巨性) 위원

김거성 위원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연세대 신학과와 동대학원을 나와 목사로 활동해 왔다. 그는 1977~1979년간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수감됐었고, 친북단체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사회국장·중앙위원(1988~1989),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상임집행위원·인권위원(1990~1991), <민주주의민족통일 경기북부연합> 상임의장(1993~1995), ‘통일맞이 칠천만 겨레모임’사무총장(1994),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중앙위원, 통일위원장 및 조직위원장(1994~1998),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사무처장, 집행위원 및 기획위원장(1998~2004),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1999~2005), ‘전경련 기업윤리협의회’ 자문위원(2002~), 건설교통부 ‘부패방지추진기획단’ 위원(2003~), 국무총리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위원(2004~),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2005~), <부패방지위원회> 비상임위원(2005~)으로 활동하고 있다.⁷²⁾ 그는 ‘한총련합법화 종교인 1000인 선언’(2002.7.18), ‘국보법 전면폐지 촉구 70년대 민주화운동가 선언’(2004.10.27)에 참여했다.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⁷³⁾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

71)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_asp?WW_NO=145344(검색일: 2008. 3. 26)

72)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_asp?WW_NO=134130(검색일: 2008. 3. 26)

73) 현재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합하여 2008년3월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94년 설립되었다.

(1) 이유정(李淑靜) 전 위원

이유정 위원은 이화여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이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⁷⁴⁾ 이 위원은 <민변> 간부출신으로 ‘송두울’ 변호에 나섰으며, ‘한총련합법화 종교인 1000인 선언’(2002.7.18), ‘한총련합법화 1000인 선언’(2002.7.19), ‘양심수석방각계인사기 자회견(2003.4.8)’, ‘양심수석방 300인 선언’(2002.8.10) 등에 참여했다.

(2) 최상림 전 위원

최상림 위원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파병반대범국민행동’, ‘탄핵무효범국민행동’, ‘FTA저지범국본’ 등에 참여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노동위원장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3) 신철영(申撤永) 전 위원

신철영 위원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서울대 공대를 나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동의장(1990), 민주당 노동위원장(1991~1992), 경실련 조직위원장(1998~1999), 제3기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 위원장(1999~2004)을 지냈다. 또한 제6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2001~2003)으로 활동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2008년 2월까지 제8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역임하였다. 신 위원장은 ‘국보법 전면폐지 촉구 70년대 민주화운동가 선언’(2004.10.27)에 참여했다.

(4) 박종렬 전 위원

박종렬 위원은 ‘한총련 합법화 종교인 1000인 선언’(2002.7.18) 등에 참여했다. 박 위원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고고인류학과를 나와 ‘인천민중교육연구소’ 소장(1988)을 거쳐 현재 ‘인천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생명평화기독연대’ 공동대표 및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2005~)로 활동 중이다.

74)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_asp?WW_NO=90555(검색일: 2008. 3. 26)

4. <방송위원회>의 위원

<방송위원회>⁷⁵⁾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되었다. 방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위원회에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연)> 관계자들이 대거 진출해왔다. <민언연>은 국보법폐지 등 노무현 정권의 4대입법을 지지해 온 좌편향적 정향을 나타낸 단체이다.

(1) 최민희(崔敏姬) 전 부위원장

최민희 위원은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월간 ‘말’ 지의 기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1985)를 거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중앙위원(1990), 동 협회회의 사무국장(1994)과 사무총장(2000), 제3기 방송위원회위원 겸 부위원장(2006.7~2008.2)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최 위원은 2004년 이후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맡고 있다.⁷⁶⁾

또한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운영위원장으로 민족해방(NL)계열 단체들과 같이 활동해 온 인물이다. 최부위원장은 각종 국보법폐지 집회를 주도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난하는 한편 “종속적 한미관계에서 벗어나 미군없는 한반도를 준비하자”는 주장을 펴왔다. 그리고 최 위원은 인터넷 통일뉴스 등 좌파매체를 통해 ‘북한인권회의 반대 기자회견’(2004.5.2.14), ‘국가보안법철폐기자회견’(2004.12.15), ‘파병반대시국선언’(2004.11.16) 등을 주도하면서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2) 정연우 전 위원

정연우 위원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신문학 박사학위를 취득 후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광고소비자시민연대’ 공동대표를 겸직하고 있다.⁷⁷⁾ 정 위원은 <민언연>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으며, 방송위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75)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명칭변경과 함께 업무도 2008년 3월 1일부터 이관되었다.

76)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354959(검색일: 2008. 3. 26)

77)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74604(검색일: 2008. 3. 26)

(3) 한상혁 전 위원

한상혁 위원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방송위 방송발전 기금관리위원, 보도교양심의위원이다.

(4) 김용태(金勇泰) 전 위원

김용태 위원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라벌예술대 회화과를 나와 ‘민족미술협의회’ 사무국장(1985),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사무총장(1988), ‘코리아통일미술축전’ 남측대표(1993), ‘98민족통일예술축전’ 남측방문단장(1998),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부회장 및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거쳐 2006년부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⁷⁸⁾ 김 위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또한 김용태 위원은 <통일연대>의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송두울 석방 촉구성명’(2003.10.23) 등에 동참했다.

(5) 김서중(金瑞中) 전 위원

김서중 위원은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신문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신문학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으며, 현재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위원은 2005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제1기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7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⁷⁹⁾

(6) 이종수 전 위원

<방송위>는 2003년 송두울 입국에 앞장섰던 단체이다. 2003년 당시 KBS이사장이었던 이종수 위원은 송두울 입국 직전 KBS의 다큐 ‘한국사회를 말한다’(2003년 9월 27일 방영)라는 프로에 출연, “해외민주인사들을 포용하자”며 송두울 입국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 위원은 방송에서 “어차피 언젠가는 이룩해야 될 민족의 대명제인데, 이런 사람들이 통일운동의 기틀이 될 수 있는 힘으로 이용하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고 관용을 호소했다. 또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통일운동으로 가게 됐고,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 한국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했다.

78)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106869(검색일: 2008. 3. 26)

79)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51809(검색일: 2008. 3. 26)

이 위원은 특히 송두율 입국 한 달 전인 2003년 9월 초 서강대 박호성 교수와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나병식 상임이사 등 두 명과 함께 베를린의 송씨 집을 방문, 귀국문제를 논의해 물의를 빚었다.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는 취지에서 2005년 8월 출범하였다.⁸⁰⁾ 동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비상임위원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박종관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은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부이사장, ‘(사)충북민예총’ 사무처장, ‘충북문화운동연합’ 의장을 역임하였다.⁸¹⁾ 박 위원은 ‘충북민예총’ 부지회장으로 ‘한총련 합법화 종교인 1000인 선언’(2002.7.18), ‘양심수석방 300인 선언’(2002.8.10), ‘송두율석방 시민사회 1000인 선언’(2003.10.23)에 참여했다.

(2) 전효관 위원

전효관 위원은 현재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교수, <문화연대> 문화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문화연대>는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및 평택범대위, 파병반대범국민행동, FTA저지범국민본, 탄핵무효범국민행동 등에 참여해왔다.

(3) 김언호(金彦鎬) 위원

김언호 위원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중앙대 신문학과를 나와 동아일보 기자(1968~1975)로 재직했고, 현재 도서출판 한길사 대표로 있다. 김 위원은 현재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2005~),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비상임이사(2005~)로 재직 중이다.⁸²⁾ 김언호 위원은 ‘국보법전면폐지촉구 70년대 민주화운동가선언’(2004.10.27)에 참여했다.

80)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81)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82)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46695(검색일: 2008. 3. 26)

(4) 박신의(朴信義) 위원

박신의 위원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제4대학교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박 위원은 1899년 이후 <민족미술협의회> 평론분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위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남북 및 국제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⁸³⁾ 또한 박 위원은 큐레이터 출신으로 현재 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4년 이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박 위원은 ‘송두울석방 시민사회 1000인 선언’(2003.10.23)에 참여했다.

6.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의 수집 편찬과 국사의 보급을 주관”하기 위하여 1946년에 창설된 국가기관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주보돈(朱甫墩) 위원

주보돈 위원은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북대 사학과를 나와 현재 경북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전략분과 교육문화팀 위원(2003)을 지냈고, 현재 문화재청 사적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⁸⁴⁾ 주보돈 위원은 ‘국보법폐지 촉구 전국교수 1000인 선언’(2004.10.27) 등에 참여했다.

(2) 서중석 위원

서중석 위원은 <제주4·3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서 위원은 ‘국보법폐지 촉구 전국교수 1000인 선언’(2004.10.27) 등에 참여했다.

83)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79453(검색일: 2008. 3. 26)

84) bill.joins.com/people/search/1000/basic_all.asp?WW_NO=53964(검색일: 2008. 3. 26)

VI. 관련단체의 이념성향과 위원회의 활동평가

1. 위원이 소속(관련)된 단체의 이념성향

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은 1991년 12월 1일 재야운동권의 13개 부문단체와 12개 지역단체가 참여하여 결성되었다. 2007년 6월 기준으로 8개 부문단체,⁸⁵⁾ 12개 지역연합,⁸⁶⁾ 9개의 참관단체⁸⁷⁾가 가입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재야운동체이다.⁸⁸⁾ 그리고 <전국연합>은 2001년 9월 22~23일 충북 괴산군 보람원수련원에서 열린 소위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라고 결의하였다. 연방제통일 실현을 다짐한 이날의 결의는 ‘9월 테제’ 또는 ‘군자산의 약속’이라 불린다.⁸⁹⁾ <전국연합>은 ‘군자산의 결의’ 이후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전국연합>은 동 자료집에서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①북한의 ‘사회주의(社會主義)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후, ②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반제전선에 가세·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이다.

<전국연합>은 국보법 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 실현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추종해온 친북단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전국연합>은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소위 범대위(凡對委)라는 기구를 구성, 친북반미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전국연합>은 어떤 이슈가 발생되면 항상 반미를 중심에 두고 이슈를 전개하였다. 예를 들면 한미FTA는 FTA의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기 보다는 반미(反美)를 염두에 두고 처리하였다.⁹⁰⁾

85) 8개 부문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반미여성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총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사월혁명회’ 등이다.

86) 12개 지역연합은 ‘서울연합’, ‘인천연합’, ‘경기남부연합’, ‘경기동부연합’, ‘대전충남연합’, ‘대구경북연합’, ‘광주전남연합’, ‘전주완주연합’, ‘서부경남연합’, ‘울산연합’, ‘부산연합’, ‘김제민주연합’ 등이다.

87) 9개의 참관단체는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운동연합’,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자주민주통일민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다.

88) 제성호·유동열(2008), p. 84.

89) 김승욱(2006), p. 27.

90)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고(김광동, 「반FTA인가, 반미인가」, 자유기업원, 2008)

나.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

<통일연대>는 2001년 3월 15일 ‘6.15공동선언 실현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가치를 들고 결성된 재야통일전선체이다. 현재 <통일연대>는 <전국연합>, <민주노총>,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등 47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통일연대>는 결성선언문과 규약전문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계승하여 통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자주’는 반미자주화투쟁을, ‘민주’는 반파쇼민주화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통일’은 연방제통일을 의미한다.⁹¹⁾ 따라서 <통일연대>는 남한의 통일원칙⁹²⁾보다 북한의 통일3원칙에 입각하여 통일관을 전개하고 있는데, 북한의 통일3원칙에 입각한 통일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일연대>는 남한의 통일방안을 ‘통일 불가능을 전제로 한 방안’, ‘한반도의 전쟁을 일상화하는 분단고착화방안’이라고 매도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하고 있다.⁹³⁾

이처럼 <통일연대>의 주장들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방안을 부정하고 북한의 통일노선을 정당화하며,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1993년 5월 27일 고려대학교에서 전국 186개 대학이 참가하여 결성한 국내 최대의 학생운동단체이다. 한총련의 전신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이다. <전대협>은 1985년 미문화원 점거사태의 주역인 <삼민투(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위원회)>, 1986년 반미반정권투쟁의 선도세력인 <자민투(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 건국대 점거사태의 주역인 <애학투(전국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등의 투쟁성과를 계승하여 1987년 전국 95개 대학이 가입한 전국적 규모의 학생조직이다. 따라서 <한총련>은 <전대협>의 활동을 계승, 발전시킨 전국규모의 강력한 학생조직이다.

<한총련>은 강령에서 ‘민중중심, 학우중심의 사상’을 채택하고 있다.⁹⁴⁾ 여기서 <한총련>의 ‘민중중심, 학우중심의 사상’은 주체사상의 ‘사람중심, 인민대중 중심의 사상’을 원용한 것이다. 따라서 <한총련>의 사상노선은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조직의 지

91) 제성호·유동열(2008), p. 90.

92) 대한민국의 통일3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이다.

93)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국내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제」, 2007, p. 26.

94) 12기 한총련 강령 전문 중에는 “한총련은 민중중심, 학우중심, 단결의 사상을 바탕으로 애국의 길을 가는 한국대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이다”라는 표현이 있다.

도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매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조국통일구호를 발표하고 있다. <한총련>은 북한이 발표한 조국통일구호를 <한총련>의 총노선을 통해 통일구호를 발표하고 있다. 2005년 북한의 조국통일구호는 ‘3대 민족공조(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이며, <한총련>의 통일구호도 ‘3대 민족공조’이었다. 2006년에는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이었으며, 2007년에는 ‘3대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이었다. 이처럼 <한총련>은 북한의 통일구호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 통일노선을 정당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이다.⁹⁵⁾

또한 <한총련>은 강령과 규약을 통해 ‘자주, 민주, 통일노선(일명 자민통 노선)의 실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자주=반미 자주화의 실현을, 민주=반파쇼(독재)민주화 노선의 수용을, 통일=연방제통일의 실현과 북한의 통일3원칙의 수용으로 귀결된다.⁹⁶⁾

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승가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승가회)>는 1992년 설립되어 주로 비전향장기수를 후원하는 불교계 중심의 재야단체이다. <실천불교승가회>의 이사장은 승려 지선이, 명예의장은 청화 스님이 맡고 있다. <승가회> 공동의장인 승려 효림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한총련합법화대책위’, <통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⁹⁷⁾

<실천불교승가회>는 2005년 5월 파주시에 ‘통일애국투사묘역’을 조성하였다. 동 단체는 1992년 설립 이래 1998년 8월 ‘비전향장기수후원회’, 1999년 9월 ‘국보법반대국민연대’, 2001년 3월 <통일연대>에 참여하면서 비전향장기수 후원, 국보법폐지 등에 전력하고 있다. ‘통일애국투사묘역’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보광사에 남파간첩으로 알려진 금재성, 최남규와 빨치산 출신 류낙진, 정순덕, 손윤규, 정대철 등 비전향 장기수 6명의 유해가 비석과 함께 안치돼 있다. 묘역의 비문은 남파간첩에 대해 ‘의사(義士)’, 빨치산 출신에 대해 ‘애국통일열사’라 부르고 있으며, 이 묘역을 연화공원이라고 한다.⁹⁸⁾

마. <한국전 규명위>와 <베트남위원회>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이하 한국전 규명위)>는 6.25 전

95) 제성호·유동열(2008), pp. 99-100.

96) 유동열(2006), pp. 346-351.

97) 김승욱(2006), p. 286.

98) 김승욱(2006), pp. 281~285.

쟁 당시 소위 “국군, 미군, 우익청년들에 의한 양민학살을 진상 규명하겠다.”며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정통성 없는 반민족 세력이 득세해 왔다”는 등의 주장을 펴왔다. <한국전규명위>는 ‘통한의 목소리’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여 이 단체의 주장을 전파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전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이하 베트남위원회)>는 “베트남전 당시 파월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진상규명하겠다”는 취지로 2000년 조직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파월한국군을 ‘양민 학살군’으로 매도했다.

바. <사월혁명회>⁹⁹⁾

<사월혁명회(구 사월혁명연구소)>는 1960년 4.19혁명에 참가했던 세대가 ‘4.19혁명이념의 올바른 정립과 그 구현’을 목적으로 1988년 6월 18일에 설립되었다. <사월혁명회>는 <전국연합>의 단체이다.

<사월혁명회>는 4.19의거를 기화로 남한 내 지하로 잠입한 남로당 잔존 세력들이 적극 가담, 배후 조종하여 폭력적인 민중봉기로 유도하여 적화통일의 기회로 삼으려했으나 무산되자 지하로 잠적했던 당시의 동조 세력들이 ‘6.10 민주화 운동’과 이듬해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며 국민의 민주화 요구 바람에 편승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사월혁명회>는 4.19 의거는 미완의 혁명이며 민족통일이 달성되는 그날 비로소 그 이념이 정립되는 현재 진행형의 혁명’이며 한일협정반대, 유신철폐, 부마시민항쟁, 광주민중항쟁 등은 4월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라는 창립선언을 통해 북한의 노선을 답습함을 알 수 있다.

<사월혁명회>를 만든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윤성식(尹成植)은 98년 10월 월북, 북한 노동당 외곽조직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로동신문 등에 “통일 성업에 여생을 받치리라(2004년 8월26일)”는 등의 글을 올린 인물이다.

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84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서 출발하여 2006년 3월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 명칭을 개칭하였다. <민언련>은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아래 회원 상호 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99) 인터넷신문 freezone2005.com의 수구좌파바로알기에서 검색(검색일 :2008.3.25)

있다.¹⁰⁰⁾ <민언련>은 부설매체인 월간 ‘말’ 지를 발간하고 있다.

현재 <민언련>은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연대활동은 ‘한미FTA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스크린쿼터 문화주권 사수 및 한미투자협정저지 범국민대책위’, ‘국가보안법철폐연대’, ‘파병반대국민행동’ 등이다.¹⁰¹⁾ 특히 <민언련>은 ‘국가보안법반대’, ‘한총련의 합법화’, ‘평택범대위의 불법·폭력시위를 비호’ 등과 관련한 논평에서 친북반미적 정향을 여지없이 나타냈다.

2. 관련위원회의 활동평가

가.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평가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뒤집기’의 선봉에 섰다는 비판이 많다. 예를 들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대상은 6.25전쟁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이다.¹⁰²⁾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사안의 대부분이 좌익의 피해사례여서 조사 역시 이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은 6.25 당시 양민학살이 대부분 인민군·빨치산의 만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 군경, 미군 등이 양민학살을 하였다든 상황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역사왜곡의 소지는 충분하다.¹⁰³⁾

실제로 6.25전쟁 기간 동안 양민학살의 주범은 인민군과 좌익이었다. 6.25전쟁 중 인민군 및 좌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¹⁰⁴⁾ 첫째의 유형은 인민군 남침 초반 친일, 친미 세력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자행된 조직적, 선별적 학살이다. 이때 인민군 및 좌익은 우익계 인사, 지주, 지도급 인사, 관직에 있었던 인사들을 색출하고 무고한 주민을 검거하여 체포현장에서 즉결처분하거나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였다. 둘째의 유형은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인민군이 서울에서 퇴각하는 시기 동안에 자행된 학살이었다. 이 기간 동안 인민군과 좌익은 패닉상태에서 양민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학살하였다. 이때 학살대상이 반역자 혹은 반동분자로부터 그 가족 또는 관련자까지로 확대되었다. 세 번째의 유형은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격하면서 인민군과 조선노동당은 북한지역 내의 우익인사나 납북 중이던 인사들을 대량 학살하였다. 이른바 북한지역 내 불순분자 색출의 명분으로 ‘잠재적 적대세력’을 학살하였다.

100)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참조

101)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참조

102) 전체 조사건수를 살펴보면 6.25전쟁과 관련된 사건이 88.6%,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은 5.6%, 항일독립운동은 2.5%를 차지하고 있다.

103) 김성욱, 「대한민국의 블랙리스트」, 조갑제 닷컴, 2008, p. 153.

104) 김광동, “6.25전쟁 중 인민군과 좌익의 양민학살”, 「자유민주연구학회」2권2호, 2007, pp. 79~87.

6.25전쟁 중에 인민군과 좌익에 의한 양민의 대량학살은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한국전쟁 중 민간인 사망자의 숫자는 기록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내무부의 ‘대한민국 통계연감’(1952)은 122,799명, ‘UN사령부’의 기록은 128,936명, 공보처에서 전쟁기간 중에 발간한 <6.25사변 피살자명단>의 기록은 59,994명의 사망자의 인적사항, 피해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⁰⁵⁾ 이처럼 6.52전쟁은 인류의 전쟁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참혹한 전쟁이었다. 그런데 정치적 의도에 맞춰 6.25전쟁을 ‘왜곡된 전쟁(distorted war)’으로 만들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침략당사자에 대한 전쟁책임의 소재와 사과, 전쟁납치자와 학살자에 대한 배상은 없이 오히려 침략받은 국가의 군과 동맹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사회의 중심논의가 되었다.¹⁰⁶⁾ <진실·화해위원회>가 좌파중심적 사고와 좌파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를 치중하면 할수록 역사왜곡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4월 그 동안 접수한 2,800여건 가운데 388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된 조사대상은 국군이나 경찰, 미군이 가해자라는 집단학살 사건이 365건이었고 인민군이나 빨치산에 의한 학살사건은 17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진실·화해위원회>의 왜곡된 업무처리행태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⁰⁷⁾

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원회)>의 활동 평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원회)>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위원회이다. 동 법은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¹⁰⁸⁾ 이처럼 ‘민주화운동보상법’은 ‘반 헌법적 탄압에 대한 저항’을 민주화운동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민보상위원회>는 반 헌법적 사회주의운동 또는 주사파운동을 한 단체도 ‘민주화운동’을 한 단체로 인정하고 있다.¹⁰⁹⁾ 바로 1980년대의 대표적인 주사파 지하조직인 ‘남조선민족해방애국전선(남민전)’, ‘자주·민주·통일(자민통)’,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연세대 구

105) 공보처 통계국, 「6.25 사변 피살자명부」, 1952. 3. 31.

106) 우리의 고교역사교과서에는 거창사건과 노근리사건은 있어도 6.25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인민군과 좌익세력에 의한 양민의 대량학살에 대한 내용은 없다.

107) 김승욱, 「대한민국적화보고서」, 조갑제닷컴, 2006, p. 133.

108)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법률 제8273호)

109) 주사파운동은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에 입각하여 남한의 공산화혁명을 성취하려는 세력이다.

국학생동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반미청년회’, ‘반제동맹’ 등이다.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노동자계급의 무장봉기를 통한 공산혁명을 시도했던 것으로 입증된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활동관련자 등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있다.¹¹⁰⁾

이 단체들은 사법부 판결은 물론 전향자들의 증언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돼 온 대표적인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지하조직들이다. 특히 ‘자민통’과 ‘남민전’은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따라 공산폭력혁명을 기도하다 반국가단체로 판시됐었다. 그럼에도 <민보상위원회>는 재심을 거치지지도 않고 어떤 반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들의 활동이 ‘민주화운동’이라며 사법부 판결을 뒤집어왔다.¹¹¹⁾

또한 <민보상위원회>는 한총련을 비롯해 ‘영남위원회’, ‘단기학생동맹’,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진보민중청년연합’, ‘노동자정치활동센터’, ‘서울민주노동자회’, ‘조통그룹’, ‘반미청년회’, ‘자주대오’ 등 10여개 이적단체 연루자들을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보상해왔다.

<민보상위>는 친북단체 및 좌파활동을 벌여 인사들로 구성되었고 주로 반한(反韓) 활동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우를 범하였다. <민보상위>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후 지급된 보상금액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2006년까지 보상금은 278억 52백 만원이 지급되었고 생활지원금은 269억 7백 만원이 지급되었다.

<표 3>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집행내역

(금액단위 : 백만 원)

	2002	2003	2004	2005	2006	소 계
보상금	4,951	5,758	5,486	8,800	2,857	27,852
생활지원금	-	-	-	20,907	6,000	26,907

자료출처: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3292(2006.12.11)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었는가? <민보상위>의 활동은 <민주화운동정신 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가 주도했다. <계승연대>는 각종 집회·시위·공청회·세미나 등을 통해 ‘민주화보상법’을 제정 및 개정예 직간접적으로 간여하였고, 법이 제정

110) 김승욱, 「대한민국의 블랙리스트」, 조갑제닷컴, 2008, p.140.

111) 김승욱(2008), p.140.

된 이후에는 전문위원 선정 등에 깊게 관여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주도했다. 그런데 <계승연대>는 민족해방(NL) 주사파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에하의 단체이다. <전국연합>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민청련)>의 맥을 이어받은 좌파 재야 단체이다. <민청련>은 ‘민족해방혁명론(NDR : 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에 근거하여 “한국사회를 제국주의에 기반한 민족적 모순과 독점자본에 기반을 둔 군부파쇼세력과 민중간의 계급적 모순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공산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¹¹²⁾

다. ‘일심회’ 사건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이하 한민전)>에 대한 태도

‘일심회’는 마이클 장, 최기영(민노당 사무부총장), 손정목(민노당 창당시부터 간여), 이정훈(전 민노당 중앙위원), 이진강(시민사회단체관리) 등이 주체사상을 주된 사상으로 하고 <한민전> 강령을 따르는 지하당 조직이다. ‘일심회’ 조직원들은 2003년 3월과 9월, 2004년 3월, 7월, 9월, 2005년 1월, 8월, 11월, 2006년 1월과 6월 등 중국 북경 등지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지령을 받아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작금도 수령해 왔다. ‘일심회’ 조직원들은 북한을 ‘조국(祖國)’으로, 조선로동당을 ‘우리당’으로 한국을 ‘적후(敵後)’로 불렀다.¹¹³⁾ ‘일심회’ 조직원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당 최고위원회·의원단 총회 등 각종 회의자료, 주요 당직자 344명 성향분석자료, ‘민노당의 주요 활동가’들을 사상전향 시도 등에 대한 대북보고를 해왔다. 대북보고문에는 또 ‘통일연대, 민중연대 중심의 활동가 대외 내의 사상적 통일성 및 단합의 기운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녹색연합을 통일연대에 가입시키도록 하며, 시민단체들에 대한 우리 당의 영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하자’는 등의 내용이 등장한다. 이것은 북한이 특정단체를 통해 전체 시민단체를 조종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 볼 수 있다.¹¹⁴⁾

여기서 <한국민족민주전선(이하 한민전)>의 실체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민전>의 기원은 김일성의 교시에서 비롯되었다.¹¹⁵⁾ 1961년 4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남한의 4.19를 공산혁명으로 유도하지 못한 근본요인이 남한 내 혁명을 지도할 ‘혁명적 당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남한 내 혁명당 구축을 강조하는 교시를 하달하였다. 그 결과 노동당 대남총국은 남한 내에 새로운 형태의 독자적인 혁명당인 ‘통일혁명당’을 결성하는데 성공하였으나

112) 민청련이 1983년 9월 남한사회의 변혁론으로 NDR론을 개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로서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이 NDR론을 수용하고, 1986년 3월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가 NDR론을 지도이념으로 수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유동렬(2006), p.306)

113) 2005년 3월 일심회에 가입한 최기영은 조직이 되는 선포식에서 ‘신뢰와 과업을 준 우리 당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인품을 가슴깊이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맹세했다.

114) 일심회와 관련된 내용은 김승욱의 「대한민국의 블랙리스트」(2008)를 참조

115) 1961년 9월 제4차 조선노동당 당대회를 지칭한다.

곧 바로 와해되었다. 이어서 북한은 1969년 8월 25일 대남방송인 ‘남조선해방 민주민족연맹 방송’을 통해 ‘통일혁명당’의 창당선언문과 강령을 발표하고 이어서 1970년 6월1일 ‘통혁명당 목소리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북한은 1985년 8월 8일 ‘통혁명당 소리방송’을 통하여 당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 ‘한민전’ 일명 ‘민민전’)>으로 개칭하였음을 보도하였다.¹¹⁶⁾ 이때 <한민전>은 기존의 당 강령과 규약을 <한민전>의 성격과 정세변화에 맞게 개칭하였으며,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한국민족자주선언’과 ‘한민전 10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민전>은 기존의 ‘통혁명당 소리방송’을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개칭하였다.¹¹⁷⁾

주지하는 것처럼 <한민전>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남한혁명을 위한 당면 3대 투쟁목표인 반미자주화 투쟁, 반파쇼 민주화 투쟁, 조국통일투쟁을 수행하는 북한의 애국적 전위대이다. <한민전>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혁명 전위대로 활동해 오고 있다. <한민전>은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을 통해 국내 좌익권과 재야운동권을 이념적으로 조직투쟁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특히 국내좌익 중 주사파(NL파) 운동권 세력들은 <한민전>을 국내 좌익조직의 상급조직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¹¹⁸⁾

116) 통혁명당 중앙위원회가 1985년 7월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의 명칭을 바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7) 유동열, 「한국좌익운동사」, 미발간, 2006, p. 323.

118) 유동열(2006), p. 324.

VII. 결론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정부조직이 할 수 없는 특정문제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조정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설립하여 운영한다. 다변화·다기화되고 있는 정책환경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중요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중대성으로 인해 현대사회에서는 위원회를 정부시스템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 중의 하나는 많은 정부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며, 특히 이념지향의 ‘과거사 관련 정부위원회’가 대거 설립된 것이다. 이런 ‘과거사 관련 정부위원회’는 참여정부가 국정운영에서 이데올로기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방편에 의해 설립·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주도의 ‘과거사관련 위원회’는 국론통합의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역작용을 일으켰다. 분명 갈등과 반목을 양산하고 ‘나와 다른 나’를 구분시키는데 주력했다.

‘과거사 관련 정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성향은 대부분 좌파적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천착한 인사들이다. 이들은 공공연히 북한의 통일방안의 위대성(?)을 전파하고, 세기의 독재자인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하는데 열심이다. 반면 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극도로 부정하고 부정적 역사를 바꾸는데 주력하였다. 소위 이들은 ‘역사청산론’과 ‘주도세력교체론’을 전파하는 나팔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전(前) 위원장이었던 송기인 신부는 ‘대한민국 주도세력은 친일파였다.’, ‘민족분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미군철수를 위해 평양정부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친북적 주장을 펴왔다. 현재의 안병욱 위원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건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길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은 부정하고 오히려 실패국가인 북한전체주의를 두둔하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친북좌파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한민국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에 근거한 사회체제 건립을 목표로 하였던 1980년대의 각종 주사파단체와 참가자를 소위 ‘민주인사’로 둔갑시키고, 대한민국체제를 위협하기 위해 간첩으로 활동한 인사도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분명 이들은 ‘민주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체제

전복세력'이었다.

그리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위원들은 정부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평택미군기지이전'을 반대했고, '파병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한미FTA도 반미(反美)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북한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국가보안법철폐에도 동참했다. 친북해외인사들의 '영웅 만들기'에도 주력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은 하나 같이 '주도세력교체론'에 입각해서 과거의 역사를 뒤집고 비틀기에 주력해 왔다. 이들은 전통적 사고와 전통적 관계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최악의 실패한 지도자(the worst failed leader)인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관대할 수가 없었다.

좌파적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인물들이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만 포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상임 및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데 여념이 없다. 또한 이들은 폐쇄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들만의 좌파역사'를 확대재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모든 역사에는 공과(功過)가 있게 마련이다. 바로 공(功)의 역사는 계승·발전시키고 과(過)의 역사는 반성하고 극복되어야 한다. 즉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물론 과거의 성과에 대한 성찰적 학습도 미래의 올바른 역사의 방향을 선택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과거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역사인식에 근거한 '역사청산론'은 위험천만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

이제 역사인식은 '계승발전론'에 따라 새로운 미래의 바탕을 마련하는 역사를 정립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발전적 역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역사청산론'에 입각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국가정상화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좌파적 역사관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역사 비틀기'와 '역사 뒤집기'의 선봉에 선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규명과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친북단체와 친북인명사전'을 만드는 것도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만길 「강만길 교수의 현대사강의」, 창작과 비평사, 1996.
- 공보처 통계국, 「6.25 사변 피살자명부」, 1952. 3. 31.
- 김광동, “6.25전쟁 중 인민군과 좌익의 양민학살”, 「자유민주연구학회」2권2호, 2007.
- _____, 「반FTA인가, 반미인가」, 자유기업원, 2008
- 김병섭, “정부조직의 개혁: 관리적 능률성과 정책적 능률성”, 「신동아」, 2001.6.
- 김병섭·김철, 「정부위원회조직의 개혁: 반복되는 답과 잃어버린 질문」,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2002.
- 김성욱, 「대한민국의 블랙리스트」, 조갑제 닷컴, 2008.
- _____, 「대한민국적화보고서」, 조갑제닷컴, 2006.
- 앤서니 기든스 저(김미숙 외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1.
- 연합뉴스, “과거사위 통폐합 가능할까”, 2008. 2.9
- 오마이뉴스, “베트남 공산통일은 통일이 아니던가“, 2005. 10. 8.
- 유동열, 「한국좌익운동사」, 미발간, 2006, p. 323.
- _____,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다나, 1996.
- 이상규, “행정위원회의 기능과 문제점”, 「월간감사」, 26호, 1991.
-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06.
- 제성호·유동열, 「한반도통일과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 자유기업원, 2008.
- 주간조선, DJ정부는 위원회공화국인가? 제1652호, 2001. 5. 10.
- 중앙일보, Joins.com, 인물검색
-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국내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 2007.
- 한겨레신문사,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 「한겨레21」, 2004, 7.8
- 행정자치부, 「정부위원회90개 통폐합 등 대폭정비」, 보도자료, 2007. 12.7.
- 황수연, “정부위원회 이렇게 줄이자”, 「2007 정책제안」, 자유기업원, 2007.

외국문헌

- Cohen, David M. ,“Amateur Government: When Political Appointees Manage the Federal Bureaucracy”, CPM Working Paper 96-1, 1996, p. 166.
- Hicks, H. and C. Gullett.,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 New York: McGraw-Hill, 1976.
- Rosenbloom, D. and Goldman, D., Public Administration: Understanding Management, Politics, and Law in the Public, Sector, 4th. New York: McGraw-Hill, 1998.

<별첨 #1> 정부위원회 현황(2007년 12월 31일 기준)

1. 대통령소관 위원회(7)

위원회명	근거법령	인원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기구
중앙인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7조	7인	장관급	고공단1 (사무처장겸직)	사무처 (262인)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	20인	국무총리 /민간인	민간 상근간사 1인	국무 조정실에서 수행(19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10인	장관급	3인(1급상당)	사무처 (차관급)(266인)
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법 제10조	9인	정무직(장관급)	2인(차관급)	사무처 (차관급) (210인)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	11인	장관급	1인(차관급)	사무국 (고공단)(504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9인	장관급	1인(차관급)	사무국 (차관급)(81인)
군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	군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관한특별법	7인	장관급	1인(고공단)	사무국(36인)

2. 국무총리소관위원회(13)

위원회명	근거법령	인원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기구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9인	장관급	5인(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사무처(고공단) (486인)
금융 감독위원회	금융 감독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9인	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1(1급상당)	1실2국(각고공단)(80인)
비상기획위원회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4조	30인	차관급	2인(1급상당)	사무처(1급상당)(86인)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6조	13인 이내	차관급	-	사무처(고공단)(131인)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위원회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	9인	비상임	-	사무국(45명)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9인	비상임	-	사무처 (파견인력 46인)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3조	16인	국무총리	-	사무처 (파견인력 5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20인	국무총리	-	사무처 (파견인력 21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제3조	18인	국무총리	-	지원단 (파견인력 9인)
복권 위원회	복권 및 복권 기금법	25인	국무조정 실장	-	사무처(고공단)(28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 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법률	15인	위원 중 총리임명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15인	국무총리	-	-
삼청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인	국무총리	-	-

3. 행정부처소관 위원회

소관부처	위원회명	근거법령	인원수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기구
중앙인사위원회	소청 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9조	7인 이내	차관급	4인(고공단)	행정과(4급) (32인)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 위원회	금융 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5인 이내	금감위 부위원장 (차관급)	상임위원1 (고공단)	감독정책2국 (7인)
법제처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의2	50인 이내	법제처장	2인(고공단)	행정심판 관리국에서 수행(55명)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위원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	11인 이내	고공단	3인(고공단)	행정실(4급) (26인)
교육인적 자원부(2)	국사편찬 위원회	사료의 모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제4조	10~16 인	차관급	-	1부(81인))
	교원소청 심사 위원회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7인	고공단	1인(고공단)	1과(25인)
법무부	보호관찰 심사 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9인	고검차장 검사	5인(고공단 2,4급 상당3)	보호관찰소에서 대행 (24인)
행정 자치부(3)	정부공직자윤 리 위원회	공직자 윤리법 제9조	9인	비상임	-	공직윤리팀 에서 수행
	이북5도 위원회	이북5도에 관한 특별자치법 제7조	5인	차관급	-	사무국(4급) (43인)
	경찰 위원회	경찰법제5조	7인	비상임	1인(차관급)	혁신기획과 에서 수행
농림부	품종보호 심판 위원회	종자 산업법 제91조	8인 이내	식량정책 국장	1인(4급)	농생명 산업 정책과에서 수행

소관부처	위원회명	근거법령	인원수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기구
산업 자원부(2)	무역 위원회	불공정 무역거래 행위조사 및 산업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9인 이내	비상임	1인(고공단) 1Person	무역조사실 (51인)
	전기 위원회	전기사업법 제53조	9인	비상임	1인 (에너지자원정책 본부장겸임)	사무국 (39인)
정보통신부	통신 위원회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	9인 이내	비상임	1인(고공단)	사무국(4급) (49인)
환경부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	환경 분쟁 조정법 제4조	9인	1급상당	-	사무국 (3·4급) (21인)
노동부(4)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제2조	30~90인	장관급	16인(고공단) * 지방위원회포함 16Persons	사무국 (고공단) (339인)
	고용보험 심사 위원회	고용보험법 제99조	15인 이내	고공단	-	고용보험 정책팀에서 수행
	산업재해보상 심사 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91조	29인 이내	고공단	-	사무국(4급) (20인)
	최저임금 심의 위원회	최저임금법 제12조	27인	비상임	1인(고공단)	사무국(4급) (8인)
건설 교통부(2)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49조	9인	건설교통부 장관	1인(고공단)	사무국 (3·4급) (31인)
	항공사고 조사 위원회	항공법 제152조의2	7인 이내	비상임	1인 (물류혁신본부장 겸임)	사무국 (12인)
기타(3) Other	방송 위원회	방송법제20조	9인	장관급	4인(차관급)	사무처 (민간인으로구 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15인	장관급	3인(차관급)	사무처 (152)
	국가인권 위원회	국가인권 위원회법	11인	장관급	3인(차관급)	사무처 (201인)

노무현 정권하 정부위원회 주요 인사 성향 분석

2008년 6월 20일 1판 1쇄 발행

2022년 6월 9일 1판 2쇄 발행



발행처	자유기업원	발행인	최승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7층 (07236)		
전화	02-3774-5000	팩스	0502-797-5058

※본 파일은 2008년 발행한 NGO시리즈 NO.19 『노무현 정권하 정부위원회 주요 인사 성향 분석』 책을 재편집하여 PDF로 변환한 것입니다.

© 자유기업원, 2022

비매품